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94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2205361	임이자의원	2024. 11.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7705	김주영의원	2025.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9397	박홍배의원	2025. 0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결(대안반영폐기)
2214568	정부	2025. 11. 2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1.30)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6411	정혜경의원	2026. 1. 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1. 30)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2.6.)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

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3.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월의 다음 달”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의 휴직”을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한다.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6조의5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

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등
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제16조의10제4항에 따
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
보수총액·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
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
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
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1.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
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
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컴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

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을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제48조의6제8항·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고자 하는 때”를 “반환하려는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산금”을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한다.

제48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및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48조의2제10항(중전의 제8항) 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제48조의2제10항(중전의 제8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3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월 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본다.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6제13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2, 제16조의4”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

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을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

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해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5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된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된 금액에 가산한다.

제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

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보수”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보험료) ① (생략)</p> <p>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u>보수총액</u>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u>보수로 보는 <u>금품의 총액</u></u>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u>부담하여야 하고</u>,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u>보수의 총액</u>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보수</u>----- ----- ----- ----- ----- ----- <u>금</u> <u>품</u>----- ----- ----- <u>부담하여야 한다.</u></p>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
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
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
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
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
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
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
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
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③ ----- 「고용
보험법」 제10조제3항-----

④ -----

----- 보수-----

----- 금품-----

1. 2. (현행과 같음)

⑤ -----

----- 보수-----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 (생략)

⑥ (생략)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

-----.

1.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

----- 근로
자의 개인별 월 보수 -----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생략)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단서 삭제>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

----- 월 보수-----

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 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 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2.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
-----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

-----.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
-----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
-. -----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

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1.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

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는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 전자적 기록매체 -----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제48조의6제8항·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

- 반환하려는 때 -----

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 1. (생략)
-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 3. (생략)
-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 5.·6. (생략)
- ②·③ (생략)
-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

-----.

- 1. (현행과 같음)
- 2. -----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
- 3. (현행과 같음)
- 4. -----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 5.·6.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4.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

나. -----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

다. -----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4.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 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⑧ (생략)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③ (생략)

<신 설>

⑤ -----

----- 제
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
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다)----- 같다). 예술인·노무
제공자-----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신청
에 따라 그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
-----.

⑥ ----- 근로자·예술인·노
무제공자-----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
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
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략)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
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
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
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
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
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⑦ 제5항-----

-----.

⑧ 제7항-----

-----.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생 략)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 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⑩ -----

-----.

1. (현행과 같음)
2. -----

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생략)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⑫ (생략)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생략)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

-----.

-----.

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6조의2 -----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

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생략)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 산재보험료와 -----

-----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 (현행과 같음)

제49조의6(벌칙) -----
--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50조(과태료) ① -----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1.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

2. -----제48조의2제10항제3호-----

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생략)

4.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의2제10항제4호-----

5. -----제48조의2제10항제4호-----

6.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